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168

제출연월일 : 2024. 7. 23.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광해방지의 무자, 광해방지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함.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권한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4조)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함.
- 마.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안 제5조)

전기공사업의 양도, 합병, 상속 및 양도·합병의 무효판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전기안전관리법」의 개정(안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함.

법률 제 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를 "처벌한다"로 한다.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호 중 "제28조의7제1항"을 "제28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8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제28조의8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정을 명한 사항을 기한 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자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중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을 "미수 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 제5조(「전기공사업법」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6조(「전기안전관리법」의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 본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기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 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및 제3항

-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전기공사업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전기공사업법」 제43조제3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전기안전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 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 및 제51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제4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u><삭 제></u>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제13조의2제4	제49조(과태료) ①
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	
으로 신고한 <u>자는</u> 1천만원 이하	<u>자에게는</u>
의 <u>과태료에 처한다</u> .	<u>과태료를 부과한다</u> .
<u><신 설></u>	②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
	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③ 제1항 및 제2항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부과	
・징수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2(미수범) 제40조제1항제	제40조의2(미수범)
1호의 미수범은 해당하는 본죄	<u>처벌한다</u> .
에 준하여 처벌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u>제28조의7제1항</u> 에 따른 의무	3. <u>제28</u> 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
를 위반한 자	<u> 3호까지의 규정</u>
<u><신 설></u>	3의2. 제28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제28조
	의8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정을 명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교사범 등) ① (생 략)	제62조(교사범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②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	<u>미수범</u>
와 그 미수범은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u><신 설></u>	③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
	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	<u><삭 제></u>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u>한 자</u>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6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u>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u>니한 자</u>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벌칙) 제11조에 따른 검사	<u><삭 제></u>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u>다.</u>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제51조(양벌규정)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6조부터 <u>제50조</u> 까지의 어느	<u>제49조</u>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u>.</u>
<u><신 설></u>	1.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u>1</u>. (생 략) 2. ~ 10. (생 략)

②・③ (생 략)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개정 전 제47조(벌칙)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1	제49조(과태료)	벌금을 부과하던 사항을 제49조(과태료)로 옮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경감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49조(과태료)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종전 형별 규정(2년 이하 징역)을 과태료(500만원 이하)로 전환 - 단순 행정조사의 거부행위에 대한 타법률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참고 하여 마련함에 따라, 기술적 추계는 불가

2. 상세 사유

- 제49조(과태료) 종전 형별 규정(2년 이하 징역)을 타 법률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과태료(500만원 이하)로 전환한 사항으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됨
 - '06년 동법 시행 이후 47조(벌칙)이 적용된 사례가 없어 부과 건수 및 실제 부과 금액에 대한 기술적 추계는 불가

O 해당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_	고현태	양정식	윤창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현태	044-203-5263	kk404@korea.kr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40조의2(미수 범)	원산지 거짓 표시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던 미수범에 대해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하던 사항을 미수범 처벌로 경감하는 근거 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40조의2(미수 범)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 처벌내용은 하부규정에서 규정하는 관계로 기술적인 추계 불가

2. 상세 사유

O 제40조의 2(미수범)에 대해 처벌한다는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처벌내용은 하부규정에서 규정하는 관계로 기술적인 추계 불가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_	백숙자	김진수	정석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백숙자	044-203-5848	sjbaek@motie.go.k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기59고(HJ기)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부과 전 시정명령을 먼저 실시하고, 이행하지		
1	제53조(벌칙)	않을 경우 벌금 부과하도록 규정 신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53조(벌칙)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시정명령에 소요되는 비용과 벌금부과 전 시정명령 도입에 따른 벌금 부과·수납 액수 변화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2. 상세 사유

- 제53조(벌칙) 시정명령 처리 시 행정청의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벌금부과 전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벌금부과 사례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추계는 불가
 - *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권한없이 점용하는 행위(물품 적재 등)에 대한 시정명령

O 해당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이제훈	안근영	송주호	박종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안근영	044-203-4409	mrdotan@motie.go.kr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레(0구(크)) 티 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본죄에 준하여		
1	제62조(교사범 등)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죄의 1/2을 감경하여 처벌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반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62조(교사범 등)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죄의 1/2을 감경하여 처벌토록 되었으나, 본죄가 징역형과 벌금 형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인 추계는 불가

2. 상세 사유

○ 제62조의 예비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려는 것으로, 본죄에서 정한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혼재되어 있어 실제 부과금액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과건수 변화도 예측이 곤란하여 기술적인 추계는 불가

O 해당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_	이금용	박학희	이현조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금용	044-203-4632	lky0329@motie.go.kr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46조(과태료)	개정 전 제43조(벌칙)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사항을 제46조(과태료)로 옮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경감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46조(과태료)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부과금액 상한이 벌금 500만원에서 과태료 300만원으로 감액되었 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추계는 불가

2. 상세 사유

○ 제46조(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벌금 500만원에서 과태료 300만원으로 감액됨에도 실제 부과금액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과건수 변화도 예측이 곤란하여 기술적인 추계는 불가

O 해당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	이태욱	문양택	이호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태욱	044-203-3895	tulee@motie.go.kr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개정 전 제50조(벌칙)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사항을 제52조(과태료)로 옮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형벌 규정인 벌금 100만원에서 과태료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추계는 불가

2. 상세 사유

○ 제50조(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제52조(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형벌 규정에서 행정 지도로 변경하더라도, 실제 부과금액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과건수 변화도 예측이 곤란하여 기술적인 추계는 불가

O 해당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	진세운	황윤길	박찬기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진세운	044-203-3982	jjangone@korea.kr